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 등 》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98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0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5
1.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허중식의원안)	5
2.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 설치·운영(안상훈의원안)	11

I. 개요

1.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0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2. 12.
- (3) 회 부 일 : 2025. 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국 검역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서울·강원 등을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인 바,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밖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으로 분류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도록 하여,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2.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820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7.

(3) 회 부 일 : 2025. 2. 18.

나.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동물·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대응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 (2)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II. 검토의견

1. 주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허종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생략)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u>권역별로</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 ----- <u>경기강원권 · 인천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남권 · 경북권 · 제주권 등 주요 권역별로</u>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1))에
서는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호남권, 충
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 권역별로 각 1개씩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설계 등 건립 추진 단계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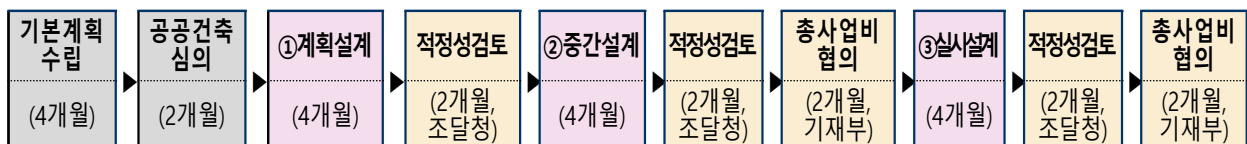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추진 현황 >

구분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정 시기	2017.8.	2020.7.	2020.7.	2021.7.	2022.4.
예타	예타 면제			예타 미면제 (→ 타당성 재조사 대상)	
지원 규모	(국고지원내용) 음압병상 36개(일반30, 중환자6) 및 구축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지원			음압수술실(2)을 포함한 감염병동	
추진단계	공사단계 (2024. 6월 착공)	중간설계 완료 (중간설계 변경중)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완료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준비 중)	중간설계 완료 (병원 자체 사업계획 재검토중)	기본계획 완료 (KDI 타당성 재조사 중)
총사업비* (국비/자부담)	781억원 (582/199)	450억원	450억원	450억원	450억원
완공 예정**	2026.12.	2028.2.	2027.6.	2028.2.	2030.8.

* 호남권(총사업비 확정(23.9.))을 제외한 4개 권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절차이행 중으로 국비만 기재

** 완공 예정 시기는 현재 추진단계 기준, 완공 가능시기를 예상한 일정으로, 추후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설계단계 업무 처리 절차>



* 상기 기간은 심의-검토를 위한 최소 기간(28개월)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소요 가능

자료: 질병관리청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
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금번 개정안은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5개 권역에 추진 중인 감염병전문병원의 추가 설립 및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호남권·충청권·경남권·경북권 외에 제주권과 인천권을 추가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수도권에 1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취지로 경기·강원권도 명시하고 있음. 그 외 서울은 설치 대상 권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함.

□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주요 권역을 명시하여 해당 권역에 추가적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및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 외부 감염병 유입의 효과적 차단과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수도권에 1개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제주권에도 1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²⁾인 바, 법 개정이 없더라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추가 설치하는 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생활권이 다른 경기도와 강원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2021. 6. 2. p25 참조.

□ 개정안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5개 권역에 추진 중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추가 지정·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권역별 구분을 법률상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가 없고, 정책적 필요나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지정 등에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 탄력적·즉각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제시 의견
기획재정부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은 음압병상의 효율적 이용, 기존 공공의료체계의 적정한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권역 구분은 기존 병원인프라, 인구 증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법에 권역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유연한 정책대응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아울러 권역별 구분을 법상 규정하는 입법례가 없음(현행 유지).
대한의사협회	- 감염병전문병원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건립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시설 장비의 막대한 자원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은 국가재정 부담만을 증가시키고 주변 의료 인프라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 또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국제공항에는 국립검역소가 설치되어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 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하대 병원·인천의료원·길병원을 국가지원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해당 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입원, 진단, 치료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공항만 근처의 검역소 및 선별 진료소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기능을 개선·발전해 나가는 것이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 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해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 4) 음압격리병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30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감염병 전문인력의 수,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 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2명 이상
-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또는 중환자 관련 분야 전문의 1명 이상

나. 간호사

8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 · 인력 · 장비 등을 설치 · 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 ·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관련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1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2.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 설치·운영(안상훈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통합관리 등을 위해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u>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이하 “감염병통합관리”라 한다) 간 접근·협업 방안</u>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8조의7(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u> ① <u>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및 관계부처, 지방자치단</u>

체, 공공기관 간 공동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통합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사항

- 최근 국외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발생 및 사망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개-사람 간 등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전파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현황 >

(단위: 명, '25.2.27. 기준)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a		2023년 ^a		2024년		2025년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전체	290	19	22	-	74	2	42	1	29	5	109	9	14	2
H3N8	3	1	-	-	-	-	2	-	1	1	-	-	-	-
H5N1	110	12	1	-	2	1	6	1	13	4	81	4	7	2
H5N2	1	1	-	-	-	-	-	-	-	-	1	1	-	-
H5N6	69	3 ^b	5	N/A ^b	37	N/A ^b	18	N/A ^b	5	N/A ^b	4	3	-	-
H5N8	7	-	-	-	7	-	-	-	-	-	-	-	-	-
H9N2	95	1	16	-	27	1	15	-	10	-	21	-	6	-
H10N3	4	-	-	-	1	-	1	-	-	-	1	-	1	-
H10N5	1	1	-	-	-	-	-	-	-	-	1	1	-	-

a 연도별 발생 기준: (~'22년) 발생일(증상발현일) 기준, ('23년~) 보고일 기준
b '24년 이전 연도별 사망 현황 자료는 없음
※ 자료원: WHO, IHR, ECDC, 미CDC, 홍콩보건부, 사건기반감시 등

< 연도별 국내 SFTS 환자 발생 수 >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환자수	79	165	272	259	223	243	172	193	198	170
사망자수	21	19	54	46	41	37	26	40	38	26

* 2024년은 잠정 통계로 추후 변동 가능

자료: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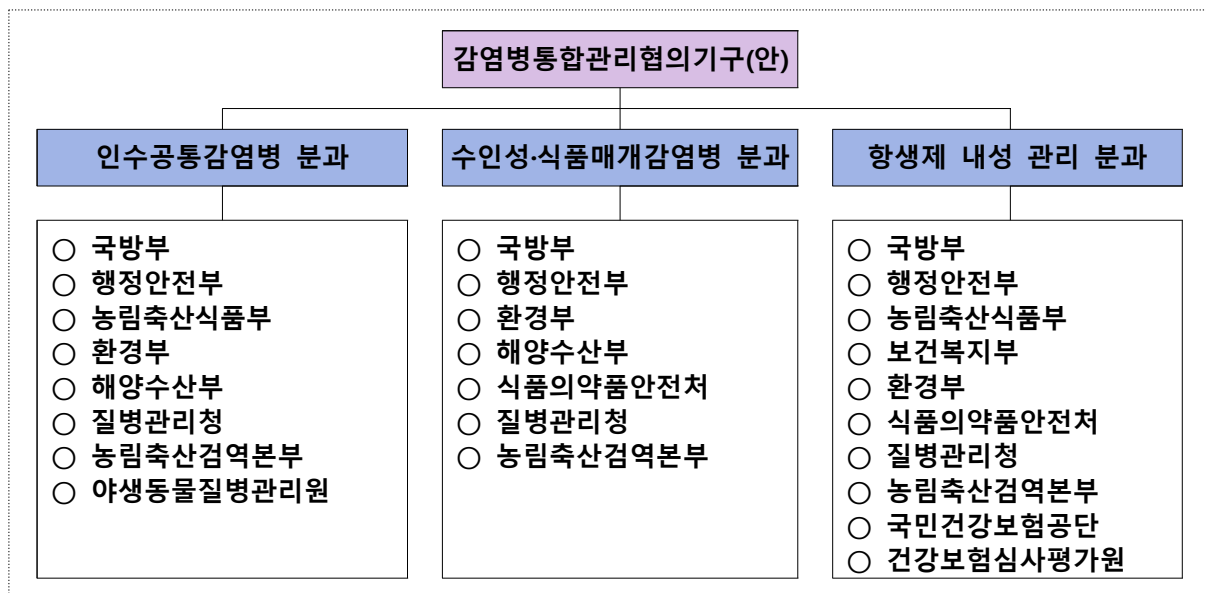
- 이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바

탕으로 사전적 대응 노력이 전제되어야 문제를 적시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봄.

-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사람, 동물, 환경 등 통합적인 원헬스 접근 전략이 필요한 분야의 공동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공통감염병 분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분과, 항생제 내성 관리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원헬스 협의체를 내부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의 체계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원헬스는 사람, 동물, 생태계 간 건강 균형을 유지하고 최적화하려는 통합적인 접근으로 인간, 가축, 야생동물, 식물, 환경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하는 접근 방식으로 정의³⁾⁴⁾하고 있음.

< 원헬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 자료: 질병관리청

3) 2022년 원헬스 고위급 전문가 기반 4자 협의체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의 정의임.

4) One Health is an integrated, unifying approach that aims to sustainably balance and optimize the health of humans, animals, plants, and ecosystems. It recognizes the health of humans, domestic and wild animals, plants and the wider environment(including ecosystems) are closely linked and interdependent.

- 한편, 개정안(제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 목적을 협의체의 운영에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 등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체는 다부처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적절해 보임.
- 그 외, 인수공통감염병 분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분과, 항생제 내성관리 분과 등으로 구성될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신설하기 보다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12개)에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와 항생제 내성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므로 이들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개정안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원헬스 접근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 원헬스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입장임.

< 관련 부처 의견 >

구 분	제시 의견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구 분	제시 의견
	있음(제5조, 제7조).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동법 제2조) - 개정안의 협의체는 조문상 감염병 통합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므로,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과 인력의 중복·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현행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1

□ 감염병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 제9조, 제10조('11.2.16. 설치)
- (위원구성) 위원 30명 이내(당연직(12명,위원장 포함), 위촉직(17명))
 - *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공무원, 감염병 등을 전공한 의료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 (위원임기) 2년(제8기 위원회 : '25.2.17.~'27.2.16., 임명직 위원은 그 재직 기간)
- (운영)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기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감염병 의심 사망자에 대한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
- 감염병의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
-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회

- (설치목적) 전문적 사항을 심의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구성) 총 12개 전문위원회 구성,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임명
- (임기) '25.2월 ~ '27.2월
 - * 감염병관리위원회 임기와 동일

【전문위원회 주요기능】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
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지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정책 등
②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여부, 그 보상 기준 및 방법 등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의 보호·지원 등
④ 결핵 전문위원회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및 결핵관리종합계획 등
⑤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역학조사 방법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역학조사관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등
⑥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감시 및 정책 등
⑦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의료관련 감염 관련 관리 및 감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 위기관리를 대비한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등
⑨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
⑩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감염병분야 R&D 중장기 추진전략 등
⑪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⑫ 검역 전문위원회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 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심의, 해외감염병의 검역관리대책에 관한 검토 및 자문, 검역조사·조치에 관한 검토 및 자문, 검역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운영방식)** 연 2회(반기별 1회) 협의체 회의 소집
- ▶ **(주요기능)** 동물 또는 환경으로부터 전파되거나 전파가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련 부처·지자체 등과 정보 공유 및 조사·협의* 등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정보공유체계 구축, 공동 역학조사 체계 구축, 합동모의 훈련 실시, 연구협력, 국제협력 등

